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3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송옥주・유동수・임종성

박용진 · 안호영 · 정춘숙

김영주 • 서삼석 • 박찬대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음.

한편,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 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회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 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관 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8 조의2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 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 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의 범 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

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존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	
	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	
	등록습지보전도시등"이라 한	
	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u>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등록습지	
	보전도시등의 범위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보전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u>있다.</u>	
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생	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라 이용	료를 징	수하는	경우에
는 그 •	용료를	- 습지보	호지역
등의 보	 존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에 시		야 한다.	
<u></u>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 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 한다.